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2019. 3. 4.

공 주 시



1. 게시기간 : 2019. 03. 04. ~ 2019. 03. 18.
2. 게시방법 : 공주시 홈페이지 게시
3. 직권말소일 : 2019. 03. 04.
4. 말소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안*국	건축물 위 치	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79
	주 소 (대장상주소)	유구읍 구계리 2구	건축물 현 황	주1 1층 목조 주택 36.30㎡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건축물의 철거·멸실	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		